

대안공사의 사업비 내 간접비용 정산 관련 질의

질 의

1. 국가기관과 대안입찰방식으로 계약한 건설공사 관련입니다.
2. 대안입찰방식에 의한 공사에서 간접비 항목(안전관리비, 건강·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등)을 실제 사용금액으로 정산함에 따라 발생한 집행 잔액을 당해 사업에 대한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직접공사비로 전용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간막이를 없애고 소통 협력하는 유능한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기획재정부

수신 부산항건설사무소장(항만개발과장)
(경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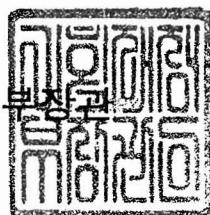
제목 법령 유권해석 질의에 대한 답변

1. 부산항건설사무소 항만개발과-2553(2013.12.12.)호와 관련입니다.

2.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에 의한 공사에서 간접비 항목(안전관리비, 건강·연금 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등)을 실제 사용금액으로 정산함에 따라 발생한 집행 잔액은 당해 사업에 대한 총사업비 범위 내의 금액이라면 직접 공사비로의 전용이 원칙적으로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다만, 직접 공사비의 증액을 위하여는 설계 변경이 선행되어야 하며, 당해 설계 변경의 인정여부, 계약금액의 조정여부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해당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할 사항입니다. 끝.

기획재정부



총사업비관리 전결 2014. 1. 8.
주무관 김청윤 과장 김금남

협조자

시행 총사업비관리과-20 (2014. 1. 8.) 접수 항만개발과-58 (2014. 1. 8.)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 <http://www.mosf.go.kr>

전화번호 044-215-7414 팩스번호 044-215-8053 / luckykcy@mosf.go.kr / 대국민 공개

국민 눈높이로 다가가는 열린 정부,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